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610호 2025. 4. 28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-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5-709호)
-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5-710호)
-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5-711호)

회 람		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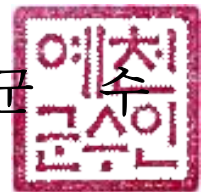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71)

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4월 28일

예 천 군 수



1. 조례명 :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정원 총수 : 771명 ※ 변동없음

구 분	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	비고
현 행	771	396	16	109	39	211	

나.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(안)

○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-일반직(안 별표3)

구 분	계	3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 경력관
현 행	724	1	4	38	178	217	185	98	3
개정안	723	1	4	38	180	217	185	95	3
증 감	Δ1	-	-	-	+2	-	-	Δ3	-

○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-연구직·지도직(안 별표3)

구 분	계	연구직		지도직	
	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현 행	46	-	11	3	32
개정안	47	-	12	3	32
증 감	+1		+1		

4. 개정조례안

- 붙임과 같음

5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EMPSHIN3266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총무과

3) 팩스 : 054-650-608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(전화: 054-650-6084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조례 제 호

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예천군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구 분	총계	본청	의회	직속 기관	사업소	읍 면
총계	771	396	16	109	39	211
정무직 계	1	1	—	—	—	—
군수	1	1	—	—	—	—
일반직 계	723	387	16	75	34	211
3급	1	1	—	—	—	—
4급	4	3	—	1	—	—
5급, 5급 내지 연구관	38	18	3	2	3	12
6급 이하	677	363	13	71	31	199
전문경력관 나군(농기계교육교관)	1	—	—	1	—	—
전문경력관 다군(사진·영상촬영)	2	2	—	—	—	—
별정직 계	—	—	—	—	—	—
6급 상당 이하	—	—	—	—	—	—
연구직 계	12	8	—	—	4	—
연구사	12	8	—	—	4	—
지도직 계	35	—	—	34	1	—
지도관	3	—	—	3	—	—
지도사	32	—	—	31	1	—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"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○ 직급조정에 필요한 비용 ※ 총원(771명)은 변동없음

구 분	계	3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 경력관
현 행	724	1	4	38	178	217	185	98	3
개정안	723	1	4	38	180	217	185	95	3
증 감	Δ1	-	-	-	+2	-	-	Δ3	-

구 분	계	연구직		지도직	
	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현 행	46	-	11	3	32
개정안	47	-	12	3	32
증 감	+1		+1		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.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약 921백만원 재정지출 증가 예상

구 분	1차 년도	2차 년도	3차 년도	4차 년도	5차 년도	합계
세 입 (백만원)	-	-	-	-	-	-
세 출 (백만원)	49	212	216	220	224	921
총비용 (백만원)	49	212	216	220	224	921

※ 최근 5년간(2021~2025) 공무원 평균보수인상률 1.9%적용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1차 년도	2차 년도	3차 년도	4차 년도	5차 년도	합계
국 비		-	-	-	-	-	-
도비	일반회계	-	-	-	-	-	-
	특별회계	-	-	-	-	-	-
	기 금	-	-	-	-	-	-
군 비		49	212	216	220	224	921
민 간							
기 타							
합 계		49	212	216	220	224	921

5. 부대의견 : 1차 년도는 2025년 하반기 증액분임

6. 작 성 자 : 행정문화복지국 총무과 지방행정사무관 황숙자(054-650-6080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○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: 49,614천 원/2025년 하반기

구 분	산출내역 (월소요액 × 6월 × 인원)	총인건비 (천원)	비고
합 계		49,614	
6급 +2명	6,203천원 × 6월 × 2명 (6급 기본급 평균 4,245천원 / 각종수당 1,958천원)	74,436	
9급 Δ3명	3,026천원 × 6월 × 3명 (9급 기본급 평균 2,100천원 / 각종수당 926천원)	Δ54,468	
학예연구사 +1명	4,941천원 × 6월 × 1명 (학예연구사 기본급 평균 4,139천원 / 각종수당 802천원)	29,646	

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「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4월 28일

예 천 군



1. 규칙명 :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개정이유

-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 총수 : 771명(변동없음)

구 분	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	비고
현 행	771	396	16	109	39	211	

나.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(안)

○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-정무직·일반직(안 별표)

구 분	계	3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 경력관
현 행	724	1	4	38	178	217	185	98	3
개정안	723	1	4	38	180	217	185	95	3
증 감	Δ1	-	-	-	+2	-	-	Δ3	-

○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-연구직·지도직(안 별표)

구 분	계	연구직		지도직	
	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현 행	46	-	11	3	32
개정안	47	-	12	3	32
증 감	+1		+1		

○ 보건소장 직급의 개방형 직위에 관한 사항 신설(안 별표)

○ 직급 상향 조정(안 별표)

- 행정 9급 2명 → 행정·위생 6급 2명

○ 복수정원 조정(안 별표)

- 행정·농업 7급 2명 → 행정·농업·녹지 7급 2명

- 행정·녹지 7급 1명 → 행정·녹지·시설 7급 1명

- 행정 8급 1명 → 행정·전산 8급 1명

○ 직렬 및 직급 현행화(안 별표)

- 행정·시설 5급 1명 → 행정·환경·시설 5급 1명

- 시설관리 7급 1명 → 시설관리 8급 1명

- 행정 8급 1명 → 행정 7급 1명
- 행정 9급 1명 → 학예연구사 1명

3. 개정규칙안

- 붙임과 같음

4. 의견제출

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EMPSHIN3266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총무과

3) 팩스 : 054-650-608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(전화: 054-650-6084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규칙명 :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규칙 제 호

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25. 6. 30.>

예천군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(제2조 관련)

구 분	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
총 계		771	396	16	109	39	211
정무직 계		1	1	0	0	0	0
	정무직	1	1	0	0	0	0
일반직 계		723	387	16	75	34	211
일반직	3급 소계	1	1	0	0	0	0
	3급	1	1	0	0	0	0
	4급 소계	4	3	0	1	0	0
	4급	1	1	0	0	0	0
	기술4급(개방형직위)	1	0	0	1	0	0
	4급·기술4급	2	2	0	0	0	0
	5급 소계	38	18	3	2	3	12
	행정	6	5	1	0	0	0
	시설	1	1	0	0	0	0
	행정·사회복지	2	2	0	0	0	0
	행정·공업	1	1	0	0	0	0
	행정·농업	1	1	0	0	0	0
	행정·시설	4	4	0	0	0	0
	행정·농업연구관	1	0	0	0	1	0
	행정·사회복지·농업	2	0	0	0	0	2
	행정·사회복지·시설	1	0	0	0	0	1
	행정·농업·녹지	2	1	0	0	0	1
	행정·농업·시설	6	0	2	0	0	4
	행정·농업·수의	2	1	0	0	0	1
	행정·농업·환경	1	0	0	0	0	1
	행정·공업·환경	1	1	0	0	0	0
	행정·보건·시설	1	1	0	0	0	0
	행정·환경·시설	1	0	0	0	1	0
	행정·시설·방송통신	1	0	0	0	1	0
	행정·농업·보건·시설	1	0	0	0	0	1
	행정·농업·환경·시설	1	0	0	0	0	1
	행정·보건·의료기술·간호	1	0	0	1	0	0
	보건·의료기술·간호·보건진료	1	0	0	1	0	0
일반직	6급 소계	180	102	2	14	9	53
	행정	29	23	2	0	4	0
	세무	2	2	0	0	0	0
	사회복지	3	2	0	0	0	1
	농업	3	3	0	0	0	0
	녹지	2	2	0	0	0	0
	보건진료	3	0	0	3	0	0
	환경	3	3	0	0	0	0
	시설	15	12	0	0	1	2
	운전	2	2	0	0	0	0
	행정·세무	3	2	0	0	0	1
	행정·전산	2	2	0	0	0	0
	행정·사회복지	7	6	0	0	0	1
	행정·공업	2	2	0	0	0	0
	행정·농업	5	3	0	0	0	2

구 분		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
		행정·보건	2	1	0	1	0	0
		행정·환경	1	1	0	0	0	0
		행정·시설	9	8	0	0	0	1
		행정·위생	4	3	0	0	1	0
		행정·운전	1	1	0	0	0	0
		행정·학예연구사	1	1	0	0	0	0
		전산·방송통신	1	1	0	0	0	0
		공업·시설	1	1	0	0	0	0
		농업·녹지	1	1	0	0	0	0
		농업·수의	2	2	0	0	0	0
		보건·간호	2	0	0	2	0	0
		공업·환경	2	2	0	0	0	0
		행정·세무·사회복지	2	0	0	0	0	2
		행정·세무·농업	21	1	0	0	0	20
		행정·세무·시설	1	1	0	0	0	0
		행정·전산·방송통신	2	2	0	0	0	0
		행정·사회복지·농업	4	0	0	0	0	4
		행정·사회복지·보건	2	2	0	0	0	0
		행정·공업·환경	1	1	0	0	0	0
		행정·공업·방송통신	2	1	0	0	1	0
		행정·농업·녹지	3	1	0	0	0	2
		행정·농업·수의	2	0	0	0	0	2
		행정·농업·시설	8	1	0	0	0	7
		행정·녹지·시설	1	1	0	0	0	0
		행정·보건·간호	1	0	0	1	0	0
		행정·시설·방재안전	1	1	0	0	0	0
		전산·방송통신·사무운영	1	1	0	0	0	0
		보건·간호·의료기술·보건진료	7	0	0	7	0	0
		행정·세무·사회복지·농업	3	0	0	0	0	3
		행정·세무·농업·환경	1	0	0	0	0	1
		행정·사회복지·농업·보건	1	0	0	0	0	1
		행정·사회복지·농업·간호	2	0	0	0	0	2
		공업·기계운영·전기운영	1	1	0	0	0	0
방호·위생·시설관리·사무운영	1	0	0	0	1	0		
방호·운전·시설관리·사무운영	2	1	0	0	0	1		
운전·기계운영·전기운영·사무운영	1	0	0	0	1	0		
기계운영·전기운영	1	1	0	0	0	0		
	7급 소계		217	124	5	22	13	53
		행정	48	32	5	0	6	5
		세무	4	4	0	0	0	0
		전산	2	2	0	0	0	0
		사회복지	8	2	0	0	0	6
		공업	2	1	0	0	1	0
		농업	3	3	0	0	0	0
		녹지	1	1	0	0	0	0
		보건	1	1	0	0	0	0

구 분		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
		간호	4	0	0	0	0	4
		의료기술	1	0	0	1	0	0
		보건진료	4	0	0	4	0	0
		환경	1	1	0	0	0	0
		시설	22	18	0	0	3	1
		운전	7	7	0	0	0	0
		행정·세무	7	4	0	0	0	3
		행정·전산	2	2	0	0	0	0
		행정·사회복지	19	5	0	0	0	14
		행정·공업	1	1	0	0	0	0
		행정·농업	9	9	0	0	0	0
		행정·환경	1	0	0	0	0	1
		행정·시설	16	16	0	0	0	0
		행정·방재안전	1	1	0	0	0	0
		행정·위생	3	2	0	0	1	0
		전산·방송통신	2	2	0	0	0	0
		공업·환경	1	1	0	0	0	0
		공업·방송통신	1	1	0	0	0	0
		농업·녹지	2	2	0	0	0	0
		농업·수의	1	1	0	0	0	0
		보건·의료기술	2	1	0	1	0	0
		보건·간호	11	0	0	11	0	0
		간호·보건진료	2	0	0	2	0	0
		환경·시설	1	0	0	0	1	0
		기계운영·전기운영	1	0	0	0	1	0
		행정·세무·농업	14	0	0	0	0	14
		행정·농업·녹지	4	1	0	0	0	3
		행정·농업·수의	2	0	0	0	0	2
		행정·농업·시설	1	1	0	0	0	0
		행정·녹지·시설	1	1	0	0	0	0
		보건·간호·의료기술	1	0	0	1	0	0
		환경·운전·전기운영	1	1	0	0	0	0
		행정·보건·간호·의료기술	1	0	0	1	0	0
		행정·보건·간호·보건진료	1	0	0	1	0	0
	8급 소계		185	95	4	26	7	53
		행정	38	29	2	0	1	6
		세무	1	1	0	0	0	0
		사회복지	10	7	0	0	0	3
		공업	3	1	0	0	2	0
		농업	2	2	0	0	0	0
		녹지	1	1	0	0	0	0
		보건	4	1	0	3	0	0
		간호	8	0	0	0	0	8
		보건진료	3	0	0	3	0	0
		환경	3	3	0	0	0	0
		시설	22	13	0	0	2	7
		방송통신	1	0	1	0	0	0
		운전	5	4	1	0	0	0
		시설관리	1	0	0	0	1	0
		기계운영	1	1	0	0	0	0
		행정·세무	6	1	0	0	0	5

구 분		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
		행정·전산	2	2	0	0	0	0
		행정·사회복지	9	3	0	0	0	6
		행정·공업	1	1	0	0	0	0
		행정·농업	21	6	0	0	0	15
		행정·녹지	1	1	0	0	0	0
		행정·환경	1	0	0	0	0	1
		행정·시설	7	5	0	0	1	1
		행정·방재안전	2	2	0	0	0	0
		행정·방호	1	1	0	0	0	0
		전산·방송통신	1	1	0	0	0	0
		공업·시설	2	2	0	0	0	0
		농업·녹지	3	3	0	0	0	0
		보건·간호	7	0	0	7	0	0
		보건·환경	1	1	0	0	0	0
		간호·보건진료	1	0	0	1	0	0
		기계운영·화공운영	1	1	0	0	0	0
		행정·농업·환경	1	0	0	0	0	1
		행정·환경·운전	2	2	0	0	0	0
		의료기술·간호	7	0	0	7	0	0
		보건·간호·의료기술	3	0	0	3	0	0
		행정·보건·간호·보건진료	2	0	0	2	0	0
	9급 소계		95	42	2	9	2	40
		행정	16	6	2	0	2	6
		사회복지	7	5	0	0	0	2
		농업	8	4	0	0	0	4
		보건	2	0	0	2	0	0
		환경	2	2	0	0	0	0
		시설	8	3	0	0	0	5
		방재안전	1	1	0	0	0	0
		운전	7	5	0	2	0	0
		행정·세무	15	3	0	0	0	12
		행정·사회복지	10	2	0	0	0	8
		행정·농업	1	1	0	0	0	0
		행정·보건	1	0	0	1	0	0
		행정·환경	3	2	0	0	0	1
		행정·시설	6	4	0	0	0	2
		전산·방송통신	1	1	0	0	0	0
		녹지·시설	2	2	0	0	0	0
		보건·사회복지	1	0	0	1	0	0
		보건·의료기술	3	0	0	3	0	0
		행정·전산·방송통신	1	1	0	0	0	0
	전문경력관 소계		3	2	0	1	0	0
		전문경력관 나군(농기계교육교관)	1	0	0	1	0	0
		전문경력관 다군(사진·영상촬영)	2	2	0	0	0	0
	별정직 계		0	0	0	0	0	0
	6급 상당(비서)		0	0	0	0	0	0
	연구직 계		12	8	0	0	4	0
		학예연구사	7	7	0	0	0	0
		기록연구사	1	1	0	0	0	0
		농업연구사	4	0	0	0	4	0
	지도직 계		35	0	0	34	1	0
		농촌지도관	3	0	0	3	0	0
		농촌지도사	32	0	0	31	1	0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 <2020. 3. 10.>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「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4월 28일

예 천 군



1. 규칙명 :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2. 개정이유

-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및 주민건강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장의 개방형 직위 선발 근거를 마련하고, 부서장 직렬을 현행화하여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보건소장 직급의 개방형 직위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5조)
- 맑은물사업소 소장 직렬 현행화(안 제32조)

구 분	부 서 명	직 위	직 렬(급)
당 초	맑은물사업소	맑은물사업소장	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
변 경			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

4. 개정규칙안

- 붙임과 같음

5. 의견제출

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EMPSHIN3266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총무과

3) 팩스 : 054-650-608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(전화: 054-650-6084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「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제32조 중 “지방시설사무관”을 “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소장 등) 예천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 로 한다. ②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5조(소장 등) 예천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 로 한다.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 건소장은 「지방자치단체의 개 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해 임용 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</u>
제32조(소장의 직급) 체육사업소 장은 지방행정사무관 ----- <u>맑은물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 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</u>	제32조(소장의 직급) 체육사업소 (생략) <u>맑은물사업소장은 지방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 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 한다.</u>

참 고

관계법령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- 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·군·구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.
-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